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일괄 정비〉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5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파산절차와 관련된 결격 사유를 일괄적으로 삭제 · 정비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9. 12.

다. 회 부 일 : 2024. 9.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귀속재산처리법」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일괄 정비

본 법률안은 파산절차와 관련된 각종 결격 사유나 해임 요건을 일괄적으로 삭제·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구체적으로는 ①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위나 영업, 자격의 결격 사유로 두는 경우와 ② ‘파산선고’를 해임 사유로 두는 경우에 대하여 결격·해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구 분	현 행	개 정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임원의 결격 사유 -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① -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제20조①	<삭 제>
	○ 제조 및 판매 등의 허가 결격 사유 - 담배사업법 제11조의2 (담배제조업허가) 제14조 (담배수입판매업·도매업등록) 제16조② (담배소매인 지정)	
	○ 귀속재산 매수 결격 사유 -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임원의 해임 사유 - 한국은행법 제38조 (부총재보)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0조①·② (은행장 등 임원) - 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 (임원)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¹⁾ 파산절차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 이는 개인이 파산절차를 활용하고 싶어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활용하지 않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²⁾에 준하여 도입된 것임.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관련 현행 법률들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직위나 영업,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파산절차 중에 있는 사람의 효율적인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파산제도의 본래 취지⁴⁾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파산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기존의 직위나 새로운 경제 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들은 이러한 참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상 파산제도 관련 결격 사유를 일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본 법률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3)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2552) 검토보고」, 2쪽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개별적인 결격조항이나 해임조항의 사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요구됨. 예컨대,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크므로 고도의 책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직위나 자격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파산선고와 관련한 자격제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임.

특히,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직위로서 재산상의 신용도가 정책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격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나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상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같이 자발적 조직체인 동시에 조합의 출자금으로 운용되는 협동조합의 경우 주요 의사결정을 선출된 임원이 수행하므로 조합의 유지를 위해서는 임원에 대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아울러, 담배제조업자나 담배소매인 등 담배사업자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을 취급하므로 높은 공익성과 신뢰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 규모와

시설이 요구되고 담배판매업의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담배 보관시설을 갖추고 담배 공급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바,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파산선고를 결정사유로 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별 법률의 파산선고 자격제한 규정 삭제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기획재정부 의견 현황]

법률명	내 용	기획재정부 의견	해당 의견 제시의 이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 매수 결격사유	수용	개정은 수용하나 사실상 귀속재산 매각 업무가 종료되어 개정 실익은 없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자 결격사유	신중검토	담배사업자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을 취급 관리하는 주체로 높은 도덕성과 거래상 신뢰가 필요하므로 자격제한 유지 필요
엽연초생산 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	신중검토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임원은 조합의 자산을 운용·관리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도덕성 필요
한국수출입은행법	임원의 해임 사유	수용	법체계 일관성, 유사 국책은행법 등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 수용
한국은행법	부총재보의 해임 사유	신중검토	법률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직위로서 업무 지속 시 통화 신용정책의 신뢰성 훼손 우려가 있고 한은법의 해임조항은 재량조항임을 고려할 필요

법률명	내 용	기획재정부 의견	해당 의견 제시의 이유
한국조폐공사법	임원의 해임 사유	수용	파산선고만으로 파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음을 감안 시, 현행 조폐공사법은 채무자회생법의 불이익 처분 금지 규정과 배치
협동조합기본법	임원의 결격 사유	신중검토	협동조합의 임원은 협동조합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거나, 업무 집행상황 및 재산상태 등을 감사하는 등 그 권한에 대한 공공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므로 자격을 엄격히 할 필요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귀속재산처리법 (안 제1조)	
第9條 左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歸屬財産의 買收人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 7. (생략)	第9條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7. (현행과 같음)
담배사업법 (안 제2조)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6. (생략)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6. (생략)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행	개정안
다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생략)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 바. (생략) 2. ~ 4. (생략) ③ (생략)	----- ----- ----- ----- ----- -----. 1. ----- ----- 가. (현행과 같음) <삭제> 다. ~ 바.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안 제3조)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8. (생략) ②·③ (생략)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한국수출입은행법 (안 제4조)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① ----- ----- ----- -----

현행	개정안
1. · 2. (생략) <u>3. 파산선고를 받은 때</u> 4. (생략) ②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한국은행법 (안 제5조)	
제38조(부충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충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u>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u> 2. ~ 4. (생략)	제38조(부충재보의 해임) ----- ----- ----- -----. <u><삭 제></u> 2. ~ 4. (현행과 같음)
한국조폐공사법 (안 제6조)	
제17조(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 3. (생략) <u>4.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u> 5. (생략)	제17조(임원의 해임) -----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현행과 같음)
협동조합 기본법 (안 제7조)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 ----- ----- ----- -----.

현행	개정안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제>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0